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2019. 9.

금 융 위 원 회
금융혁신기획단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 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 (예 : Amazon, Airbnb, Uber 등)
-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주된 사업은 금융업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대기업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Netflix, Alibaba 등)
 - 핀테크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이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
- 이에,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新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① **(Big tech → 금융업)** 빅테크는 고객·빅데이터·네트워크 등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력 사업을 **비금융업**에 두면서 **금융업**에 진출*

* Amazon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반하여 물류·배송업체 등에 대출('아마존렌딩')
Mercado Libre : 전자상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률 예측

○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를 설립·인수**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증가*

* 예) Alibaba : 지급결제(Alipay), 인터넷은행(MyBank), 금융상품 판매(Yue Bao) 등

② **(핀테크 유니콘)** 빅테크 수준의 네트워크·플랫폼 없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핀테크는 39개 ('19.1월)

* 예) 레볼루트(Revolut) : '15.7월에 설립된 송금·결제 전문 핀테크기업으로, '18년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불을 돌파하여 유니콘 기업에 합류

③ **(대형 금융회사 →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 플랫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핀테크 출자가 활발

√ **(Goldman Sachs)** ①핀테크기업 **Context Relevant**에 1,350만달러 투자 발표(BOA·메릴린치 공동, '14.9월)

→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고객 행동분석, 가격 전략 등의 솔루션을 제공

②**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15.3월)

→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동향 제공

√ **(Société Générale)** 실시간 banking시스템, 결제, 개인화 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 **플랫폼 회사 Trezor** 인수('18.9월)

→ 혁신적 결제 플랫폼 개발에 착수

√ **(스페인 BBVA)**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분석업체 Madiva**('14.12월), **UX 및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15.4월)

→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캐나다 TD Bank)**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 6** 인수('18.1월)

→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 파악·예측

√ **(미쯔비시-도쿄 UFJ은행)**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에 특화된 기업인 **Xenodata Lab**에 지분 참여('17.2월)

→ AI, 빅데이터 분석을 중소기업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II. 왜 핀테크 투자 활성화인가?

1 금융회사와 핀테크 협업의 유형

- 국내 시중은행, 초대형 IB, 보험사 등도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 추진 중

- ① **핀테크 랩** : 핀테크 유망기업을 발굴·지원 (Incubating)
- ② **Open API** : 지급결제 기능, 고객 데이터 등을 핀테크기업에 개방
- ③ **핀테크 제휴** : MOU 등을 체결하여 기술, 플랫폼 등에서 상호 보완
- ④ **출자** : 지분참여,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해 핀테크 업무 영위
- ⑤ **내부화(부수겸업)** : 인력설비투자, 합병영업양수 등을 통해 직접 핀테크 업무 영위

- 그간 정부는 핀테크 랩, Open API 등을 통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촉진해 왔고,

- 핀테크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 VC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를 촉진해 왔음*

* 핀테크 전용펀드, 혁신모험펀드,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 그런데, 금융회사가 핀테크 출자·내부화 등 보다 강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 핀테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of 합리적 개선이 필요

2 핀테크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

- ① **[금융회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 유입 가능
➔ 빅테크 등과 겨룰 수 있는 플랫폼 경쟁력 확보
- ② **[핀테크기업]** 회수시장 다변화, 외부투자 유치 증가
➔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 안정적 新기술 개발
- ③ **[금융산업 구조 개선]**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능동적 대응
➔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 부여

1 금융회사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고객의 충성도 증가(Lock-in effect)

* 예) 은행의 정보통신산업 진출 → 금융·통신데이터를 결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 할인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
보험의 AI, 빅데이터 기술 보유 → 축적된 고객의 건강정보 등을 바탕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머신러닝을 통한 위험예측 고도화

- 또한, 핀테크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연계된 핀테크기업이 늘어날수록 금융회사도 신규 고객의 유입이 가능

➔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종합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2 핀테크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 新기술 개발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지분 참여시,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新기술 개발** 가능

- 나아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인수·합병시 자본시장·VC 외 **회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新기술은 금융에 적합하게 진화***

* 예) AI·빅데이터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 운용 과정에서 고객과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

➔ 우수한 인력, 기술력을 보유한 플레이어(Player)들의 핀테크 산업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

3 디지털 전환시대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기혁신” 기회 부여

- 디지털 전환은 인력·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금융회사도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

➔ 핀테크 출자 또는 내부화를 통해 금융회사가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하면서 **“자기혁신”** 을 할 기회를 부여

Ⅲ. 핀테크 투자 관련 제도 및 문제점

1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관련

- ① (규율체계)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개별 금융업법령 외에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적용됨
- ② (출자 한도)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
 - * (은행법 §37) 다른 회사 주식 15% (출자총액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보험업법 §109) 上同 (손해사정, 사고조사, 보험상담 등 보험관련 업무 제외)
 - 이에 더해, 「금산법(§24)」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가 금지
 - * (i)동일계열 금융기관(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ii)**일정한 지배관계 형성시 '사실상 지배'**에 해당
- ③ (대상 업종) 개별 금융업법령,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업종의 범위를 제한
 - 금융회사의 ①고유업무와 직접(밀접) 관련 업종, ②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를 허용

※ 이러한 제한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15.5월)**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 존재

-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포괄적)**' 이 아닌 '**Positive 방식(열거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최근의 디지털 新기술의 발전, 핀테크·금융산업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금융회사가 해당 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경영권 인수 등의 출자가 곤란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 금융업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가 별도 인허가 없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원칙적 허용

*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 그러나, 실무 해석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성을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

➔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무를 직접 영위하기 위한 내부화도 어려워, 핀테크 관련 기술·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하는 데 곤란

3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 관련

□ 만약 핀테크 투자가 실패하여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금융위 고시)에서는 제재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나, 핀테크 투자에도 적용되는지 여전히 불확실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23)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사후제재를 우려*하여 안정적 분야에만 투자함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

* 하나은행 등은 핀테크 투자 시 면책 조건 검토 요청('19.1.16, 핀테크 현장간담회)

참고2

국내, 해외의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 규제

- (국내) 금융업법령(은행·보험), 금산법(금투·저축·여전)은 금융과 직접 관련업종의 경우에만 제한비율(15%) 이상 출자를 허용

업권	주요규제	근거규정
은행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 불가능 	은행법 §37① 보험업법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 업종의 경우 지분 15% 이상 출자 가능 (금산법상 사전승인) 	은행법 §37② 감독규정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금융·보험업, 보험관련업종, 효율적 업무 기여 업종의 경우 지분 15% 이상 출자 가능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보험업법 §115
금투 저축 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 (최대주주 등 사실상 지배시에는 5%) 이상 소유시 사전승인 필요 	금산법 §24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보험업, 금융업 직접 관련업종,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만을 지배* 가능 <p>*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금산법 시행령 §6②)</p>	금산법 §24⑥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소유 가능 	저축은행감독규정 §30①iii
금융 지주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는 <u>비금융회사의</u> 주식을 소유 불가 <p>* 다만,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법 §6의4)가 아닌 경우 5% 이내에서 소유 가능(법 §44①)</p>	금융지주회사법 §6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u>비금융회사를</u> 지배* 불가 <p>*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시행령 §2③)</p>	금융지주회사법 §19①

- (해외) EU, 일본 등의 경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EU) 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 지분 제한은 없으며, 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으로 투자총액을 제한* (보험업은 제한 없음)

* 비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60% 이내

- (일본) 최근 출자대상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17.6월)으로 은행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

*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소유 가능

IV. 개선 방안

- ◇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 신속성을 제고
- ◇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 ➔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내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핀테크 투자를 적극 독려

1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관련

- ① (출자 대상) 핀테크 新기술·新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 가능토록 **'Negative 방식'**(열거적 포괄주의)으로 해석의 기준을 마련
- **(업종 확대)** 기존 유권해석(15.5월)에 비해 기술¹⁾, 제도²⁾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을 확대**
 -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
 - * (i)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ii)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iii)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 2)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
 - **(Negative 방식* 도입)**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 가능**
 - * **정보통신기술,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이나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일본 은행법상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과 유사하게 정의)

	현행 ('15.5월 유권해석)	개선 (가이드라인 도입)
핀테크 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 다만, 그 범위가 불확실 ■ '15.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① [新기술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빅데이터, IoT 등 新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② [법·제도반영] 금융혁신법상 혁신 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Negative 방식]

② (절차) 현행 법령 내, 출자 승인 심사의 **절차적 신속성**도 확보

- (현행)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절차가 일관되지 않게 **규율***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측면

* i) **법령별** : 금산법은 **초승인시 30일 이내**, 보험업법은 **2개월 내 회신하도록 규정**
ii) **지분별** : 보험회사가 동일한 핀테크기업에 출자하더라도 **금산법 적용(지분 5%+사실상 지배)**, **보험업법 적용(지분 15% 이상)**에 따라 **회신 기간이 제각각**

- ➔ (개선)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절차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제고

* 다만,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 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 관련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

*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V. 향후 계획

- 상기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19.9.4)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19.9.24)
 -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19.10월~)
- *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금융규제운영규정 §13②)
- 한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규제혁신·감독 방안' (19.7월~)